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204000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2-01 [www.새로산동화.com](http://www.새로산동화.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19 leewh1472@naver.com

# 새로산동화

## 정 보 공 개 서

[새로산동화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새로산동화프랜차이즈]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73-31(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63-837-0909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63-832-533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63-837-0909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새로산운동화<br>프랜차이즈 | 새로산운동화   |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73-31(주현동)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개인사업자    | 2014.07.01              | 김 광 자   | 063-837-0909 | 063-832-5333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403-05-68636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배우자 | 이동권   | 새로산운동화 |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73-31(주현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김 광 자                   | 063-837-0909 | 063-832-5333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새로산운동화]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새로산운동화                                                                              |                   |
| 상 호  | 새로산운동화 OO점                                                                          |                   |
| 영업표지 |  | 제45-2010-0002038호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      |      | 0   |      |       |
| 2022년 |      |      |      | 0   |      |       |
| 2023년 |      |      |      | 0   |      |       |

전체 재무상황은 별지 참조. 당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임원 | 김 광 자 | 대표이사  | 2015. 3.05 ~ 현재 | 대 표   | 회사 업무 총괄 |
|              | 이 동 권 | 본 부 장 | 2009.2 ~ 2014.6 | 대 표   | 가맹사업총괄   |
|              |       |       | 2014.7 ~ 현재     | 본 부 장 | 가맹사업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2      | 0   | 0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 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새로산<br>운동화<br>(상표권<br>) |  | 2010.5.14.<br>출원<br>2011.9.22.<br>등록 | 4520100002038<br><br>4500362450000 | 이동권            | 2021. 09. 22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새로산운동화] 가맹사업 현황

### 1. [새로산운동화]를 시작한 날: 2010년 5월 3일

직영점 시작한날: 2009년 2월 5일(해당 직영점은 당사가 새로산운동화 브랜드를 인수하기 전의 양도회사의 직영점 오픈일입니다.)

### 2. [새로산운동화]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새로산운동화 세탁본점  | 새로산운동화 | 이 동 권   | 2010년 5월~ 2014년 6월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809-9번지      |
| 새로산운동화 프랜차이즈 | 새로산운동화 | 김 광 자   | 2014년 7월 ~ 현재      |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73-31(주현동)번지 |

### 3. [새로산운동화]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새로산운동화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세탁  | 신발전문세탁점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새로산운동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4           | 3    | 1    | 4           | 3    | 1    | 4           | 3    | 1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4           | 3    | 1    | 4           | 3    | 1    | 4           | 3    | 1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새로산운동화]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년 | 3  | -     | -     | -     | -     | 3  |
| 2022년 | 3  | -     | -     | -     | -     | 3  |
| 2023년 | 3  | -     | -     | -     | -     | 3  |

## 6. [새로산운동화]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가맹점수 5개 미만이며, 매출액이 확인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3년말<br>가맹점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m2당 | 상한            | 면적<br>3.3m2당 | 하한            | 면적<br>3.3m2당 |       |
| 전체 | 3              | -                       | -            | -             | -            | -             | -            | 산정불가  |
| 서울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전북 | 3              | -                       | -            | -             | -            | -             | -            | 5개 미만 |
| 전남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8.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새로산운동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 | 3개         | 4,167일  |

##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새로산운동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새로산운동화]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2023.1.1.~12.31 | -                      | -    | -   | -  |
| 광고 | 소계  | -               | -                      | -    | -   | -  |
|    | 인터넷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10.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발행해 가맹금을 받고 있습니다.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  |
| 보험계약자             | 새로운문화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
|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
| 보험금액              |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br>→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새로산운동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해당 없음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br>다른 업체(미지정)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5,500 ] |                  |                   |                        |                                    |
| 가입비 | 3,300     | 계약체결 후<br>15일 이내 | 영업개시이전<br>까지 계약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br>소요된 실제비용 | 반환시 당사에서<br>소요된 실제비용을<br>제외한 전액 반환 |
| 교육비 | 2,200     |                  | 교육참가전             | 교육 시작 후                | 교육진행시<br>반환되지 않음                   |

### 2)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 5,500 ]          |
| 가맹비 | 3,300              |
| 교육비 | 2,2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 V.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45,584] | 2,279          |                       |      | 66.12㎡ 기준        |
| 인테리어          | 가맹점<br>사업자가<br>지정한 업체                 | 19,800   | 990            | 내부인테리어<br>공사완료후 7일 이내 |      | 평당990            |
| 장비(냉난방포<br>함) | (미지정)<br>또는<br>가맹본부의<br>협력업체(미<br>지정) | 25,300   | 1,265          | 설치당일                  |      | 8SET             |
| 간판            |                                       | 275      | 13             | 설치1일 전                |      | 전면, 입간판,<br>내부선팅 |
| 프로그램          |                                       | 44       | 2              |                       |      |                  |
| 초도물량          |                                       | 165      | 8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견적 외 품목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본사점포개발팀<br>(063-837-0909)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br>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br>※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br>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일 것<br>만19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실비                | 다음 월 20일        | 광고 미시행 | 광고 시행후      |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실비                |                 | 판촉 미시행 | 판촉 시행후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교육 미실시 | 교육실시 후      | 교육 필요시 지급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시행업체 (미지정) | 실비                | 주문 전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연체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시행업체 (미지정) | 가맹본부 부담 금액 제외한 금액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기준:2023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해당 없음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 없음 |

▶ 당사는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영업방침변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감독을 시행할 경우 미리 통지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새로운상생운동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새로운산운동화]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과 공급업체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순번 | 품목(단위:1ea) | 공급단가 |    | 구분 |
|----|------------|------|----|----|
|    |            | 상한   | 하한 |    |
| 1  | 해당사항 없음    |      |    |    |

※ 당사는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없으며, 각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새로산운동화]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sup>①</sup>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세탁류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 [별첨4]상품품목 |
| 수선류                                                                                       |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
| 판매류                                                                                       |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세탁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 새로운산운동화     | 없음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k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br>(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백화점, 쇼핑몰,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복합다중시설내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은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새로산운동화'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                     | -       | -             | -      |

▶ 당사는 가맹점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새로운산동화]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              |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7조 2항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27조 2항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27조 2항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7조 2항  |
| ○ [새로운운동화]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7조 2항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27조 2항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조문  |
|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28조 1항 |
|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28조 1항 |
| ○ 기타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28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28조 2항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28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28조 2항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 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br>→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br>→ 승인 여부 통지<br>→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br>(063-837-0909)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새로운산운동화]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일반인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동화 가방세탁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제공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br>(063-837-0909)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새로운산운동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제한 없음                                                  | 1주 6일 이상 | 문의: 당사<br>(063-837-0909)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특별한 제한 없음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부정기적    | 배송팀    | 본사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함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         | 본사 관리부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 본사 관리부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새로산운동화]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br>가맹지역본부부담 |                                                                                              |                                                                                           |
| 광고<br>전체 행사                                                                                                     | 브랜드 및<br>상품광고             | 별도 협의<br><br>한국공정거래조정원<br>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 행사 계획<br>공고→가맹점주들<br>의 행사동의→<br>행사 시작<br>(단, 광고 성격상<br>분담비율을<br>조정하여야 함이<br>상당할 경우<br>조정가능함) | - 대중매체 광고<br>- 명절, Day<br>이벤트 행사<br>(전국 행사)<br>- 전체 가맹점사업<br>자의 50%이상<br>동이가 있는 경<br>우 시행 |
|                                                                                                                 | 브랜드 및<br>상품광고+가맹<br>점모집광고 |                                                                                                                                               |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                   |                                                                                              |                                                                                           |
| 판촉 전체 행사                                                                                                        | 통상적인 전체<br>행사             |                                                                                                                                               |                   | 행사 계획<br>공고→디자인 및<br>기념품 등 시안<br>제시→ 행사 시작                                                   | - 월별판촉행사<br>- 전체 가맹점사업<br>자의 70%이상<br>동이가 있는 경<br>우 시행                                    |
| 기타 개별<br>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                   | 상동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 (손해의 배상)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5조(비밀유지의무), 제16조(경업금지의무) 및 제29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 및 가맹사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3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20         |        |
| 사업 설명 · 상담     |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br>- 인근 가맹점 10개 리스트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20~19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br>- 계약서 제공                                   | D-19~18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18         |        |
| 가맹금 예치         | -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 D-18~15(3일)  | 5,500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18~15(10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18~8(10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18~3(15일)  | 45,584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2(2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br/>&lt;분할지급 시 절차&gt;<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br>고객관리,<br>위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br>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br>(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br>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br>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br>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br>영지도 후 [ 7 ]일 이내에<br>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br>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br>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br>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br>이를 설명                  | 협의하여 부담                                                     | 문의 : 당사<br>(063-837-0909)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br>고객관리,<br>위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br>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br>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br>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br>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br>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br>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br>경영지도 후 [ 7 ]일 이내에<br>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br>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br>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br>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br>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br>포함된 통상의<br>경영지도 비용을<br>초과한 부분에<br>한함) | 문의 : 당사<br>(063-837-0909)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새로산운동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새로산운동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구 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 한                         | 비 고            |
| 신규 교육                                                                             | 매뉴얼 교육  | 실습교육<br>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br>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수시 교육                                                                             | 매뉴얼 변경  | 실습교육          | 매년 가맹계약<br>체결일로부터<br>1개월 이내 | 매년 필수적으로<br>이수 |
| 특별교육                                                                              | 영업방침 변경 | 실습교육          | 사유 발생시                      |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새로산운동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br>(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신규 교육                                                    | 2일   | 22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2일   | 무상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 교육                                                    | 1일   | 무상                     |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전북 | 새로운산운동화 영등점 |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로 11(영등동)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9년 4개월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70,387               | 당사는 직영점의 매출액을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063-837-090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별첨1] 필수 설비/집기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